함안군의회에서 의결된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함 안 군 수 조 근 제 인

2023년 5월 8일

함안군조례 제 2808 호

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·의령지사"를 "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"으로, "금액의 하한액"을 "보험료의 하한액 이하"로, "보험료액은"을 "보험료는"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장애인세대 :"를 "장애인세대: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한부모 가정 :"을 "한부모가족:"으로 한다.

1. 노인세대: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

제4조 중 "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 · 의령지사장"을 "공단"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·의령지사장"을 "공단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단은 신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자격상실시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하며, 매년 말까지 연간 보험료 납부결과 또는 보험료 지원안 내문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할 수 있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·의령지사"를 "공단"으로 하며,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해 지급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 처리하고 보험료 납부결과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의 제목 "(예산 확보)"를 "(예산 확보 및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 중 "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"를 "군수는 지원예산을 매년"으로, "확보하여야 한다"를 "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9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9조(정산 및 반납) 공단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 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에 지원하는 보험료에 상계하 여 지원한다. 다만, 회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발생한 차액은 회계가 마감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중단 및 환수)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"저소득 주민"이란 <u>국민건강</u>	국민건강
보험공단 함안ㆍ의령지사의 건	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
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	<u>다)</u>
험료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	
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	
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<u>금액</u>	<u>보험</u>
<u>의 하한액</u> 인 세대를 말하며, <u>보</u>	료의 하한액 이하 보험
<u>험료액은</u> 건강보험료와 장기요	로는
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	
다.	
제3조(지원대상) 보험료 지원대상	제3조(지원대상)
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제2조	
에 따른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세대를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	
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	
한다.	
1. 노인세대 : 만 65세 이상	1. 노인세대: 세대주가 보험료
	<u>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</u>
	<u>65세 이상인 세대</u>
2. <u>장애인세대 :</u> 「장애인 복지	2. <u>장애인세대:</u>
법」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	
장애인	

- 3. <u>한부모 가정</u>: 「한부모가족지 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4. (생 략)
- 제4조(지원 신청 등) <u>국민건강보</u> <u>험공단 함안·의령지사장</u>은 제 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 와 지원금액을 군수에게 매월 신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 선정) 군수는 <u>국</u> 민건강보험공단 함안·의령지 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보 험료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 여 지원 결정한다.

<u><신 설></u>

제6조(지원시기 등) 보험료는 연 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 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<u>국</u> 민건강보험공단 함안·의령지 사의 청구 계좌로 일괄 지급한

3. <u>한부모가족:</u>
 4. (현행과 같음) 제4조(지원 신청 등) <u>공단</u>
 제5조(지원대상 선정) <u>①</u> <u>공단</u>
② 공단은 신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자격상실시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하며, 매년 말까지 연간 보험료 납부결과 또는 비험로 기의하네무요
과 또는 보험료 지원안내문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할 수 있다. 제6조(지원시기 등) ①
<u>공</u> <u>단</u>

다.

<신 설>

제8조(예산 확보) 지원예산은 매 제8조(예산 확보 및 지원) 군수는 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해 지급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 처리하고 보험료 납부결과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지원예산을 매년 -----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정산 및 반납) 공단은 이 조 례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와 실 제 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에 지원하는 보험료에 상계하여 지 원한다. 다만, 회계가 끝나는 마 지막 달에 발생한 차액은 회계 가 마감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군 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중단 및 환수)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 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─ 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〉 -

1. 개정이유

O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자 안내문 송부 사항 신설 (제5조제2항)
- 나. 보험료의 지원 결과 통보 사항 신설 (제6조제2항)
- 다. 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사항 수정 (제8조)
- 라. 보험료의 정산 및 반납 사항 신설 (제9조)
- 마. 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 사항 신설 (제10조)